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제한경쟁(지역), 총액입찰, 소액수의]

건 명	용역개요	계약기간	기 초 금 액
김포한강차량기지 전차대 운전 시스템 개조 및 시설물 개선	운전 별첨 과업설명서에 의함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기초금액 : 47,567,651원 추정가격 : 43,243,319원 부 가 세 : 4,324,332원

가. 건 명 : 김포한강차량기지 전차대 운전시스템 개조 및 시설물 개선 용역

나. 과업대상 및 범위 : 세부내용 과업설명서 참고

다. 용역기간 : 착수일 ~ 60일 이내

라. 기초금액 : **금 47,567,651원**

- 추정가격 : **금 43,243,319원**

- 부가가치세 : **금 4,324,332원**

※ 견적서 제출 전 공고문, 과업설명서 등 모든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발주 담당자와 통화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별도 첨부하는 과업설명서로 같음 합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07. 08.(수) ~ 2026. 07. 14.(화) 10:00
개찰일시	2026. 07. 14.(화) 11:00
개찰장소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경영팀 입찰집행관 PC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촌역길139 김포한강차량기지 3층)

3. 견적제출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 면허를 등록하고 견적제출 제출 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춘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

마.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같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과업설명서에 의거 성실하게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2인 이상 견적제출 시 성립**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 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031-8048-1528)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31-8048-1529)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본 공고의 기술 내용 안내는 '김포골드라인에스알 에스(주) 기술관리실' 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 내용 안내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기술관리실 (☎031-8048-1551)

나. 입찰 참가 전에 공고문 및 과업설명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향음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며 3개월 ~ 2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8.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제9호 및 제10조의8호에 따라 종사자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의 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확인 후에 용역대금을 지급합니다.

9. 계약상대자(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천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7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견적제출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시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11. 수입인지(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 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용역착수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제출로서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

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를 희망하거나 견적제출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를 통하여 견적제출 안내공고 및 견적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의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설명서 등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이 유찰된 경우 재견적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재견적 제출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견적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견적제출 결과로 같습니다. 계약상대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계약상대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인감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와 계약체결 후 계약당사자 지위 변경통보 시 지체 없이 계약을 변경된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미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견적서제출과 관련하여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와 견적참가자간 공고문 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김포골드라인에스알(주)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견적참가자는 관련한 모든 사항을 공고문 및 과업설명서와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혹은 문의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견적제출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견적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 전자견적제출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터(☎1588-0800)

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및 용역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와 통화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관련 문의 : 기술관리실, ☎ 031-8048-1551

- 계약 관련 문의 : 경영팀, ☎ 031-8048-1529

위와 같이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08일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대표이사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대표이사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에서 시행하는 _____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협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0 회사 대표 000 (서명 또는 날인)